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9. 14 선고 2022가단10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8. 7. 4. 접수 제64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6,836,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254,4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D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54774호로 C을 상대로 하여, 대여원금 39,843,265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1. ‘C은 D 주식회사에게 41,252,338원 및 그 중 39,843,265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 2) D 주식회사는 2020. 5. 21.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E는 2020. 9. 16. 다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은 2018. 5.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C, G, H, I, J이 있었다.
- 2)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8. 5.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8. 7. 4. 접수 제64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구북구청,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가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있어 피고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F와 동등한 권리가 있고 단지 그 소유 명의만을 망 F의 단독 소유로 해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C)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피고)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피고)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가. 취소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의 2021년 공시지가 기준1) 가액 합계액이 9,893,271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가액 역시 위 금액 정도로 추인되는바,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1,252,338원 및 그 중 39,843,2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일(2018. 5. 9.) 이후인 2019. 1. 30.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인 6,836,292원(= 3,974,600원 + 2,861,692원)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6,836,292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별지]

4 4

1. 경북 군위군 L 대 516㎡ 중 피고 지분 18/156
2. 경북 군위군 M 대 195㎡
3. 경북 군위군 N 전 251㎡
4. 경북 군위군 O 전 1,547㎡
5. 경북 군위군 P 답 1,045㎡. 끝.

1) 원고는 공시지가에 1.5를 곱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범위 내에서 2021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다.